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규제〉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88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정의 신설	6
3.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조치 등	13
4. 의무이행 확보 수단	3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6. 3. 26.

다. 회 부 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 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순히 유통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생성·편집·합성·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제2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표적인 수범자로 하여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특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¹⁾,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²⁾,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³⁾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인공지능서비스, 특히 딥페이크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정보, 현실과 구별이 어려운 합성영상 등 각종 불법정보가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해 생성·편집되어 확산·유포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은 용이해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2025년 12월부터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그록(Grok)’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이미지

1)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2)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를 생성·유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더해 새로이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서비스 제한조치, 과태료 규정 등을 추가함으로써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규율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규제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의 근거가 없으므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정보통신망은 정보의 생성보다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점, 「인공지능 발

4) 머스크의 AI ‘그록’, 성적 이미지 양산에 각국 비판 쇄도,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2026.1. 6.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서 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
고 해당 법률이 인공지능사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인공지능 규제의
기본법이라는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개정안의 문언상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여 각
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법률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야 할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수범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전적으로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청소년 보호 체계
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상 규제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3. (생략) <u><신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u>

현행	개정안
4. ~ 13. (생략) ②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2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주요한 수범자로 하여,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불법정보의 종류 및 그 유통 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정보가 확산·유포되고 있어,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련 규제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함.
- 첫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및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정보 규제의 근거를 정보통신망법에 두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이미,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제2조제6호에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인공지능서비스”로 약칭하고 있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임.
-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교집합 영역에 존재하는 자로 볼 수 있음.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비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개정안)
개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
인공지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본질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법률이므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같이 규정하여 온라인에서의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율할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할지 각각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 이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on-device’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규제의 근거를 두기 어렵고,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on-device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관련 규제를 담을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공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각 법률의 목적 및 규율대상에 더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음.

- 반대로 현재는 기술적으로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개별·구체적인 규율을 정보통신망법에서 하는 것이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총괄적인 사항이나 시책 등을 규정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기로 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과정상 논의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을 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함으로써 규율 대상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으므로 규율 대상이 명백하게 중첩되는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부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므로, 부처 간의 소관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어서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 바, 포함관계에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들은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추가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적용도 받음.

-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들은 기존의 규제에 더해 신설되는 규제들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신설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대상 규제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금지,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제공 금지 규정은 직접 그러한 정보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생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후적인 유통을 금지하는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 규제와 별도로 신설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사전적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규제가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연결기기등 및 이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⁵⁾, 기본적으로 정보의 생성보다는 유통을 규율하는 법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제정되어 발전해온 법률인 반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으

5) 이창범·황창근·정필운 공저,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3), 12p.

로서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의 생성 관련 규제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이뤄지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무 부과, 관리 및 감독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7호나목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등 다른 인공지능 규제와 중복성 및 비례성 등을 고려해 정할 사항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주요 의무 수범자가 포괄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본질적 사항인 주요 의무 수범자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조치 등(안 제32조의5제2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안 제32조의5제2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시책 유형에 인공지능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추가하고, 청소년유해정보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정보의 생성·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하여 추가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42조의4).
-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합성영상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편집물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자에게 생성·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생성등 방지조치 및 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43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 ----- ----- ----- ----- ----- ----- -----이하 “합성영상등”이라-----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략)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1. 제42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제42조의4제4항의 점검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제출 2. 제4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43조의2제3항의 점검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 ----- -----. 1. 2.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 ----- ----- ----- -----

현행	개정안
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4. (생략)</u> <u>② (생략)</u> <u><신설></u> <u><신설></u>	-----. 1. ~ 3. (현행과 같음) <u>4. 인공지능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u> <u>5. (현행 제4호와 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 <u>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제42조의4(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①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생성등”이라 한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u>

현행	개정안
	2. <u>과도한 이용의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의 게시</u> 3. <u>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을 위 한 기술적 조치</u> 4. <u>청소년 이용자가 청소년유해 정보의 생성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u> 5. <u>그 밖에 청소년의 보호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u> ③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 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의 개인적·사회적 관계 형성 을 통하여 감정적·정서적 교 류를 유발하는 서비스 또는 이 를 모사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인공지능서비스(이하 “관계 형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u> 1. <u>연령별 생성 가능한 정보에 관한 기준의 수립 및 공개</u>

현행	개정안
<신설>	2. <u>청소년 이용자에게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고지</u> ④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⑤ <u>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3조의2(인공지능서비스를 활용한 합성영상등의 생성 금지등) ①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성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u> <u>1. 합성영상등</u> <u>2. 제4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u> <u>3.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u>

현행	개정안
	<u>정보</u> <u>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생성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그 이행에 관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1.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u> <u>2. 로그 기록 및 처리 내역의 보관</u> <u>3.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생성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경고</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u>

현행	개정안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관리계획의 제출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국내대리인 지정(안 제32조의5제2항 신설 등)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⁶⁾.

- 국내대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함.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별도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

6)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록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에 따른 물품·서류 제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2조의5제2항 각 호의 구조가 개별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안 제42조의4제4항의 점검 및 제43조의2제3항의 점검에 따른 물품·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각 호로 나누면서 개별 조문을 인용하는 구조를 선택하기보다, 현행법 제32조의5제1항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안 제42조의4제4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도록 조문 구조를 단순화⁷⁾하는 수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합성영상등의 방지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고, 지정 대상이 기술적 조치 부과 대상과 일치하고 업무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7) 예컨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2조의4제4항 및 제43조의2제3항의 점검에 따른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산업통상부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관련,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상 약속”을 감안하여 미국 기업 차별 및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과도하고 중복적 의무 부과를 지양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통상 분쟁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안 제41조제1항제4호)

- 현행법 제41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⁸⁾.
- 개정안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규정 신설과 함께 해당 조문에 인공지능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시책의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

8)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현행법 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안 제41조제1항제4호의 내용이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시책의 마련 및 지원 규정의 취지상 오히려 구체적으로 각호를 규정하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부 시책 마련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고려할 때, 정부가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 의무 이행 수단 확보에 도움이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확산은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제29조제3호에 정부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의 보호 등(안 제42조의4 신설)

-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주로 유해콘텐츠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아래 표와 같이 두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제도>

조문	내용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9제1항제3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제44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및 제재조치

- 안 제42조의4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생성등”)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특히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게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의 규제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주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 및 광고금지, 영상정보 등 보관의무와 표시의무

및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지정되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일단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반면, 개정안은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해 최초에 생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므로, 기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와는 목적, 규제방식 및 대상이 상이하여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이 도입하려고 하는 규제의 방식이 유통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제공을 규제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러한 규제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2조의4제1항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프롬프트 등 입력에 따라 일정한 산출물을 생성하므로 그러한 프롬프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산출물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업계 또는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법문언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유해정보’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서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범위가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들은 생성등을 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화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1조제3항은 청소년유해정보의 기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미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임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전문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이 있는 후에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반면,

개정안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기준을 고시하는데, 사실상 전문 심의기관의 심의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유통 단계에 앞선 생성 단계에서의 규제이므로,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과정에 비하여 최소한 같거나 더 강화된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 기준은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43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통된 주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조문 구조나 취지상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서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모호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추가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등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그러한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시정명령,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강의 사항도 정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 현행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⁹⁾, 제

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2조의5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¹⁰⁾, 제42조의3에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자¹¹⁾ 모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도, 각각 법률에서 그 기준의 예시 등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 기준이나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나아가, 안 제42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조치가 각각 대상이 누구인지 불명확한데,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는 그 대상이 성인 이용자가 아닌 청소년임을 안 제42조의4제2항제4호와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되는 정보 규제를 보완해 청소년 유해정보 생성등을 통한 제공 금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생성 금지를 모든 인공지능서비스 대상으로 하되, 생성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 의무 부과를 선별적으로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폭 넓은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0)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이용자 입력에 따라 결과물이 생성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하는 결과물이 청소년유해정보인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인공지능서비스를 활용한 합성영상등의 생성 금지(안 제43조의2 신설)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2제1항¹²⁾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하에서 “합성영상등”이라 약칭하도록 변경하여, 안 제43조의2에서도 해당 약칭을 사용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합성영상등의 생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합성영상등의 생성 금지

12)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의무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3조의2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4조의2는 조 제목이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이고, 제1항은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 제43조의2는 조 제목이 ‘인공지능서비스를 활용한 합성영상등의 생성 금지 등’이며 제1항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합성영상등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합성영상등’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정보로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합성영상등’ 자체가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법 제4조의2에서도 합성영상등, 그것의 무분별한 유통,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명확히 구분됨.
- 즉, 현행법 제4조의2는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지, 합성영상등의 생성 및 유통을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데, 개정안은 합성영상등 자체의 생성을 금지하고 있어 법문언이 목적과 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합성영상등’의 생성 금지가 아니라, ‘합성영상등으로서

성착취물’, ‘합성영상등으로서 제44조7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와 같이 그 자체로 불법적 행위로 처벌대상이 내용의 정보 생성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 제4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합성영상등’의 생성 자체를 막는 것은 합법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자체도 금지하게 될 수 있어,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및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43조의2제1항제1호 신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추가로, ‘합성영상등’ 여부를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식별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합성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¹³⁾를 가리키는데, 합성영상등인지를 식별하려면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13)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별 이용자가 입력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등이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유통 및 소지등이 개별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므로 생성등도 금지할 필요가 있고, 합성영상등 생성 금지는 모든 인공지능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생성 방지 위한 조치는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모든 합성영상등을 대상으로 생성·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생성하려는 영상등 결과물이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성평등가족부는 사전차단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미수범도 처벌함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서비스를 악용해 합성영상등의 생성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자는 미수범으로 보고 운영자가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도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합성영상등 일률적 금지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의무 수범자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불법 영상물의 해악을 고려해더라도 ‘합성영상등’의 생성·제공의 일률적이고 원칙적인 금지는 합법적 표현물 차단 우려가 있는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4. 의무이행 확보 수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제76조)

가. 개정안 요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조치 또는 합성영상등 생성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3조의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조치 또는 합성영상등 생성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해당 인공지능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90일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 이행 시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3조의4).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한 자, 합성영상등을 제공한 자, 관련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지정 의무 위반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1항제5호의3부터제5호의7, 제2항제4호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3조의3(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제42조의4제4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u>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 제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제42조의4제4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현행	개정안
	<u>권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제한의 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u> <u>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이 제한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u> <u>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공 제한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 제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5의2.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76조(과태료) ① ----- ----- ----- ----- -----.
<신설>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설>	5의3.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한 자
	5의4.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6.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삭제 4의2. (생략)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생략) ③·④ (생략)	자 5의6.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 제한을 위반한 자 6. ~ 12. (현행과 같음) ②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 ----- ----- 4의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으로 과징금 부과, 인공지능서비스 제공 제한, 과태료의 세 가지를 도입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도입하려는 제재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합성영상등의 생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각각의 제재조치가 그러한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가 처벌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제재가 과도할 경우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정도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및 서비스 제공 제한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국내 사업자에게만 실질적으로 벌칙규정이 적용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가 보유한 정보를 전달받는 연락 창구에 가까운 지위에 있고,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정보통

신방법 위반 관련 물품·서류 제출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 실제로도 국내대리인과 해외 본사 간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 규제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¹⁴⁾.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이 적용되면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 이후에 다양한 벌칙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매출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최장 180일에 달하는 서비스 제공 제한 등 과도한 제재처분 근거 신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과징금·서비스 제공 제한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되어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등 과태료 규정만 도입하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14) 윤혜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6호, 2025.3

어려워 사전 차단이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합성영상등 생성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과징금 및 서비스 제공 제한은 위반 정도에 비하여 약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비스 제공 제한 처분의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 및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서비스 제공 제한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할 수 있어 처분 요건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로 인해 국내 사업자에게 규제가 집중되는 역차별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의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